

| 사회적 대화 현장 |

대학 강사, 교원 신분 부여된다

논의 시작 8년 만에 합의안 도출

박석모 <참여와혁신> 기획이사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리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아래 놓여 있던 대학 강사들이 교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교육부에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지난 9월 3일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시간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0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 논의를 시작한 이래 8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원 지위가 부여되면 이에 따른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임용기간 내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이 제한되며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또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관련하여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임용기간의 경우,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예강사법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임용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 같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합의안에 따라 본격적인 강사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조선대에서 강의하던 고 서정민 강사가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2011년 12월에 강사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2013년 1월 시행하려던 강사법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대량해고를 부르고 비정규 교수만 양산한다는 강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4차례 시행이 유예됐으며,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8년 만에 합의에 이른 만큼 강사제도 개선안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